

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발의년월일 : 2000. 2.
발의자 : 의회운영위원장

의안	
번호	

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개정('99. 8. 31) 및 동법시행령 개정('99. 12. 31)으로
의회의 정기회 제도가 정례회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에
맞게 조례상의 자구를 정비하려는 것임.

주요골자

행정사무감사시기 : 정기회의 기간중 → 제1차 정례회의 기간중
으로 수정

첨부

1.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 1부
2. 관련법규 발췌 1부
3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

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중 "정기회의기간중"을 "제1차 정례회의기간중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련 법 규 발 쥐

〈지방자치법〉

제38조(정례회의) ①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.
②정례회의 집회일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[개정 '91. 12. 31, '94. 3. 16, '99. 8. 31 시행일 2000. 1. 1]

〈동법시행령〉

제19조의4(정례회의 집회일 등) ①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·7월중에, 제2차 정례회는 11월·12월중에 집회하여야 한다. 다만,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7월·8월중에 집회할 수 있다.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제1차 정례회는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지방의회에의 부의안건
2.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지방의회에의 부의안건

③법 및 이 영이 정한 사항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[신설 1999. 12. 31. 대통령령 제16672호]

신·구조문 대비표